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 (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미리 학생,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전년도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7조의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미리 학생,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전년도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.